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기획재정부 등 8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약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법인의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2조(「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본문 중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를 “자본
금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하나의 경비업무”로 한다.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허가요건란 중 “1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의 납입자
본금”으로 한다.

제4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제2호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5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자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제6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별표 5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등록하려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제7조(「전자정부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자본금”을 “자본금(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3호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9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표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10조(「직업안정법 시행령」의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제11조(「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13조(「해외이주법 시행령」의 개정)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을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5천만원 이상의 <u>자본금</u> 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3. 4. (생략)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u>납입자본금</u> ----- ----. ----- -----. 3. 4. (현행과 같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억원 이상의 <u>자본금</u> 을 갖출 것	2. ----- <u>납입자본금</u>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3조(감리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 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생략) 2. <u>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u> ② ~ ⑦ (생략)	제73조(감리법인의 등록 등) ①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자본금(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6조의2(등록요건) ①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자본금</u> ,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3. <u>납입자본금</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② (생략)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억원 이상의 <u>자본금</u>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생략)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u>납입자본금</u> ----- ----- ----- <u>말하고, 개인의</u> <u>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u> <u>을 말한다</u>) 2. (현행과 같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억원 이상의 <u>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u> 을 갖출 것	2. ----- <u>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 ----- ----- ----- -----.
1. <u>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u>	1. <u>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669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715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3 - 5544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2 - 7069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0 - 5164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연 락 처	(032) 585 - 318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0950
-------	------------------